

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법 개정 요청사항

● 개요

2017 년 2 월 7 일부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. 고시된 직무범위가 안전관리자의 현 실태와 상이한 부분이 많아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 직무고시의 취지

전기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안전관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고 전기시설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자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가 새로이 고시된 걸로 현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으며 공감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. 하지만 몇 가지 법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.

● 직무고시의 문제점

- ① 고시된 법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가 전기안전공사의 법정검사 수준으로 되어있어 점검을 위한 장비를 구입한다 해도 현장에서의 점검시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.
- ② 특히 이 법은 일반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사전 교육 등 아무런 준비 없이 전문 수준의 점검을 할 경우, 오히려 안전사고 및 기기 고장발생의 우려가 있으며, 매년 계측장비의 교정에 따르는 비용부담과 시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.
- ③ 또한 건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매년 정전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Global Net Work 및 연구진행, 생산, 업무 System 보완미비 등 여러 요인으로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.
- ④ 고시된 법령에 따라 자체 점검이 불가능하여 검사를 외부에 의뢰할 경우 검사비용이 너무 과다하여 개정이 필요함을 건의 드립니다.

산업통상자원부 답변

●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“전기안전관리의 직무 고시를 현장에서 시행하는데 있어 장비구입 및 검사비용 문제, 안전사고 및 기기고장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, 고압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검사기관에서 실시하고, 전기안전관리자는 저압 전기설비 점검을 실시하도록 직무 고시를 개정”에 대한 내용입니다.

● 「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」고시는 「전기사업법」 제 73 조 제 6 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4 조제 3 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, 방법 및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, 전기안전관리자가 효율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,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.

- 이와 관련, 동 고시 제 3 조제 2 항의 점검 종류와 측정 주기는 전기설비 고장에 따른 사고위험성과 계통에 미치는 영향, 사용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규모와 특성에 관계없이 점검하여야 합니다.

●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명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(예: 종합병원), 계획 정전 하에서도 생산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시설(예: 석유화학, 철강, 반도체 등)에 한하여 무정전 점검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**무정전 점검장비(부분방전진단, 자외선코로나, 적외선열화상 등)**를 활용하여 점검하게 함으로써 정전점검에 준하는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● 귀하께서 건의하신 “고압이상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서 시행”하도록 요청하신 부분은 고압반, 저압반의 전기설비 차이 사고 위험성과 사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전문가와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필요 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.

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※ 관계법령 제개정 등으로 답변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참고용입니다.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관련법령 : 전기사업법 제 73 조(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

작성부서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안전과 |

한국전기기술인협회 답변

● 접지측정 측정주기 변경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한국전기 기술인협회 답변

● 답변

- 생명·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 또는 반도체·석유화학·철강 등과 같이 정전이 될 경우 생산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·측정 대신 누설전류 측정, 부분방전측정, 코로나진단, 적외선 열화상 측정 등 무정전 진단방법 으로 대체하여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
- 또한, 산업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장비구비나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에 정기점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, 진단업체 선정시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에 따라 전기설비 분야로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장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를 선정토록 유권 해석한 바 있습니다
- 참고로, 점검주기 변경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, 사업장에 전기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소유자, 위탁업체, 안전관리자의 책임 등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,
- **해당 설비에 대한 점검주기, 항목 등이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**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